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3. 30 선고 2021가단1334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3. 16.

판 결 선 고 2022. 3. 30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7. 3. 22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7. 6. 27. 접수 제37343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민

별지